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지침 제정

추진배경

- 기계 하역구조 운반용기는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5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 사용연한을 초과하려는 경우 사용연장검사를 받아야 함



플라스틱 내용기



경질플라스틱제 용기



금속제 용기



주문자맞춤형
금속제 용기

제정

- (대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로서,
 -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용기
 -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용기
- (제정)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1호(2025.8.18. 시행)
 -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의 항목·방법 등을 규정
- (운반용기 취급자)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5년)을 초과하려는 경우
 - 사용연한 만료일 전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해야 함
 - (운반용기 검사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조사용시설, 살내외보관시설검사표>

검사내용		검사방법	검사결과	비고
1)	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질이 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샘플링확인	적부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u>사용연한</u> <u>이내의 것을 사용</u> 해야 한다.	샘플링확인	적부	

비고: 검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지침 제정

추진배경

①주문자 맞춤형 금속제 용기 및 ②최초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의 사용연장 검사방법 미비

제정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최초검사	주문자 맞춤형 금속제 용기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의 운반용기 (금속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경질플라스틱제)
받지 않은 용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관검사 2. 일반구조 3. 운반용기 재료 4. 표시사항 5. 기밀시험 6. 내압시험 7. 비파괴시험 8. 부속설비시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구조 2. 표시사항 3. 기밀시험
받은 용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구조 2. 표시사항 3. 기밀시험 4. 부속설비시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구조 2. 표시사항 3. 기밀시험

